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0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 
【의원발의】  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3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3. 11.
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임미연 의원 외 7명(서보영, 박종길, 남현주, 정창근, 이진환, 박왕규, 이영빈)
- 발의일자: 2025. 2. 26.(수)
- 회부일자: 2025. 2. 26.(수)
- 검토기간: 2025. 2. 26.(수) ~ 3. 5.(수)

## 2. 제안이유

- 달서구 주민의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 및 제4조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2. 26. ~ 3. 9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주요 내용으로
  -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  - 안 제5조는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음.
  - 안 제6조는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동물등록 후 양육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,
  -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통해 시간적·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반려동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실·유기동물 보호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# 【 관계 법령 】

## □ 동물보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6. (생략)

7. “반려동물”이란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8. ~ 13. (생략)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·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,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략)